

제 839 호

No.839

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
(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or)

상 호 : 에이알시스템 (주)
(Name of Company) (ARSYSTEM Co.,Ltd.)

대 표 자 : 한상모
(Name of Company Representative) (HAN SANG MO)

법 인 등 록 번 호 (생 년 월 일) : [135511-0204615]
[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(date of Birth)]

신 고 업 종 : 전문건설업(기계설비공사업)
(Type of Business) (Machinery & Equipment)

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 :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32 (정왕동, 시화공단1마
(Address of Company) 201호)
(32 Gyeongje-ro, Siheung-si, Gyeonggi-do,
Korea)

「해외건설촉진법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is an enrolled international contractor in compliance with Clause 1 under Article 6 of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.

2019년 01월 08일

해외건설협회장

(Chairman of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)



해외건설업신고사항(상호, 대표자, 영업소소재지)이 변경된 경우
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210mmx297mm 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

▪ 해외공사 수행에 앞서..

해외 건설사업을 하실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수주활동 상황보고, 계약체결결과보고, 시공상황보고, 공사내용변경보고, 준공보고등이 있습니다.

아울러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 입니다.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,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 입니다.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는 과태료(300만원 이하)을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.

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하여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.

2010.12.20부터 '해외건설e정보시스템(yes.icak.or.kr)'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/처리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.

▪ 해외공사 수행절차

01

수주활동 상황보고

- 도급공사 :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
- 개발형공사 :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
-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: 300만원 이하
- 근거규정 : 법 제13조,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11조

02

계약체결결과보고

-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
-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: 300만원 이하
- 근거규정 : 법 제13조,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13조

03

시공상황보고

-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
-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: 300만원 이하
- 근거규정 : 법 제13조,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15조

04

공사내용변경보고

-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-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: 300만원 이하
- 근거규정 : 법 제13조, 시행령 제 17조, 시행규칙 제18조

05

준공보고

-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-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 : 300만원 이하
- 근거규정 : 법 제13조, 시행령 제 17조, 시행규칙 제18조

연 초(1~2월)에 전년도 공사수행(계약, 기성, 기성수령)이 발생된 모든 공사
▶ 관련법령 해외건설촉진법, 동 시행령, 동 시행규칙

▪ 관련보고 접수처

수주활동상황보고, 계약체결결과보고, 공사내용변경보고, 시공상황보고, 준공보고
- 해외건설협회 사업관리실(TEL : 02-3406-1072/1082/1109/1108 FAX : 02-3406-1150~57)

실적신고, 인력고용확인
-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센터 (TEL : 02-3406-1083/1141 FAX : 02-3406-1150~57)



[해외진출 전문가 자문]

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해외건설사업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건설 수주권 창출을 위하여 해외건설에 특화된 자문위원 POOL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전문가자문 지원	전문가 자문위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토교통부 지원 중소기업 무료 전문가 자문제공 • On/Off Line 자문제공 • 대상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문 제공 • 1:1 or 1:다(대상기업:전문가) 자문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건설분야 20년 이상 경력자 • 건설분야 15년 이상 경력의 전문자격 보유자 • 변호사, 관세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• 보증, 보험 등 금융지원 전문가 • IT기술자, 각종 영문지원 전문가

1 자문 분야

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 분야에 걸쳐 전문가 자문제공

- 진출지역 건설시장 환경, 시장개척, F/S
- 수주활동 및 입찰참여
- 계약체결 및 클레임
- 법률, 세무, 회계, 통관, 리스크 관리
- 토목, 건축, 플랜트(Oil / Gas에너지, 발전, 산업설비, 환경)
- 금융, 보증, 보험
- 국제인증(ISO)



2 신청 요건(자격)

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해외건설업자(해외건설업 신고필)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자

- 해외건설업자 신고 및 등록 확인 :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(Tel 02-3406-1057)
- 중소기업 확인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sminko.smba.go.kr>)

3 자문 절차

